

회 의 록

시행	대학평의원회-710 (2021.4.27.)		보존기간 : 5년
회의명	제13차 대학평의원회 임시회의(대면회의 및 Webex화상회의 병행)		
일시	2021년 4월 27일(화) 12:30 ~ 14:00	장소	G601-1호
의안	■ 심의 안건 - 금오공과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■ 기타 안건 - 대학평의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학칙 일부개정 발의 관련 논의 - 대학발전을 위한 구성원 인식조사 특별위원회 관련 논의 - 감사 자료 요청 관련 논의		
토의내용 요지	학칙 일부개정학칙안 심의, 기타 안건 논의		
합의사항	■ 심의 안건 ○ 금오공과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- 원안대로 의결함 - 조직개편 및 부속 시설 등 조직 신설 시 역할에 합당한 기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기본시설, 지원시설, 부속시설, 연구시설의 역할 및 기구배치 원칙을 명시한 내부지침을 마련할 것 ■ 기타 안건 ○ 대학평의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학칙 일부개정 발의 관련 논의 - 대학구성원 다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 대학평의원회 심의가 가능하도록 학칙 제14조(대학평의원회)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추진하기로 함 (참석자 11명 중 9명 찬성) *현행: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총장, 대학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중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사항 *개정안: 그 밖에 총장 또는 대학평의원회 의장이나 재적 평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교육에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- 학칙 제97조(학칙개정)의 경우 재적교수 4분의 1 이상이 학칙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명발의만 가능한지 무기명발의도 가능한지 불명확하여 교무처를 통해 자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요청하기로 함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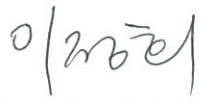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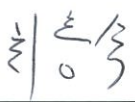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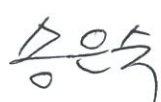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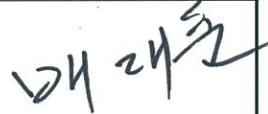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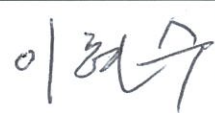
- 개정 발의 사유가 동일한 서로 다른 두 항(학칙 제14조 제2항제6호와 학칙 제14조2 제2항제4호)에 대해 각각 발의를 해야 하는지 교수회 임시총회에서 개정 발의 사유에 대해 교수 4분의 1 이상이 동의하였으므로 두 항을 같이 발의해도 되는 것인지 교무처를 통해 자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요청하기로 함
- 자문변호사 법률 자문 결과에 맞추어 학칙 제14조(대학평의위원회) 제2항제6호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

○ 대학발전을 위한 구성원 인식조사 특별위원회 관련 논의

- 대학평의위원회의 규정미비로 인하여 교수, 직원, 조교, 학생으로 구성된 대학발전을 위한 구성원 인식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은 교수회 특별위원회를 활용하여 진행하고, 추후에는 대학평의위원회가 필요시 자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대학평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마련하여 다음 평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

○ 감사 자료 요청 관련 논의

- 감사 대응 자료 요청 시 그 필요성에 대해 대학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것

이견사항							
참 석 현 황	참석대상자	14명	참 석 자 서 명 란	구 분	직 위	성 명	서 명
				산업공학부	의 장	김상호	
				정보전산원	부의장	이정희	
	참 석 자	14명		신소재공학부	사무국장	김종복	
				신소재공학부	평의원	박노진	
	불 참 자	0명		경영학과	평의원	이용환	위임
불 참 내 역				기계설계공학과	평의원	손정우	
				IT융합학과	평의원	지선구	위임
				화학소재공학부	평의원	장진호	
				학생처	평의원	최홍숙	
				교무처	평의원	송은숙	
위 임 내 역	이용환 지선구 김성훈			기계공학과	평의원	배재춘	
				전자공학부(4학년)	평의원	이현수	
				화학소재공학부(4학년)	평의원	김성훈	위임
				신소재공학과(대학원)	평의원	최성희	
				작성자		소 속 : 대학평의원회	